

과업지시서

-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2층 미당문고 라키비움 전시공간구성(전시연출)용역 -

2024.02.

동 국 대 학 교
관리처 시설안전팀

■ 일반사항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2층 미당문고 라키비움 전시공간구성(전시연출)용역

나. 위치 :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2층 310-B227, B228(2개실)

다. 사업내용

항 목		내 용
전시물 제 작 설 치	전 시 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벽체구조물 및 입구 월(Wall) 등 제작 설치■ 도자기 및 유품, 기타 미당 선생 물품 보유분(중앙도서관 제공)■ 진열장 배치, 조명설비 설치, 쇼케이스 및 회의 테이블 배치 외
홍 보	홍 보 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내부 배너 또는 판넬 등 미당 선생 주요 약력 등 컨텐츠 외
기 타		그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시연출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

라. 사업목적 :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내 서정주 시인 기념실인 ‘미당문고’ 라키비움 (Larchiveum=Library + Archive +Museum) 공간을 조성후 최신 복합문화 전시공간 및 미당 아카이브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

마. 현장설명회 – 미실시, 현장 확인후 견적할 것

1) 현장설명회 미실시

2) 입찰 일시 – 구매관재팀 안내(우리대학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)

2. 입찰 조건

가. 용역기간 : 착수후 1주 이내(2024.02.25.까지 완료, 업체선정 즉시 착수준비)

1) 용역기간 변경 가능한 사유

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사 불가능
-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으로 기간내 공사 불가능
-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의거 공사기간 변경이 필요할 시
- 기타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발생

2) 예정공정표 작성후 발주처 승인 득할 것

다. 질의응답 : 해당 없음

라. 현장 조건

1) 작업시간 (긴급공사의 경우,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 기간 및 일정 조정할 수 있음)

가) 평일 : 08시 ~ 18시 (철거 및 소음작업 제외)

나) 주말 및 공휴일 : 08시부터 가능 (철거 및 소음작업 권장)

다) 공사기간 중 작업 불능일(공사일수 제외) : 입시 및 기타 교내 행사

2) 용전용수 - 발주자 부담 (단, 현장 설치비는 계약업체 부담)

3) 주차비 - 계약업체 부담 (유료)

마. 용역조건

1) 계약 즉시 착수 조건이며, 지역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없음

2) 인원 자재 투입, 근무시간 조정으로 공기만회할 것

3) 이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한다면, 견적 시 반드시 반영 할 것(공사 중 추가비용 요구 할 수 없음)

4) 발주자의 요청(문서발송)에 의한 공사 중지 이외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 없음

5) 발주자 업무지시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시행계획 및 방법 등을 공문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답변 미이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은 계약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.

바. 하자이행보증 조건

1) 기간 : 준공일로부터 2년

2) 보증금율 : 3%

3. 사업 세부 지침

가. 우리대학은 「순수내역입찰방식」으로 별도의 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 비용 산출은 현장여건(현장 여건 조사) 및 도면, 시방서(과업지시서), 기타 제공 자료의 사양에 따라야 한다. 공사기간(단기)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은 없다.(반드시 도면과 시방의 내용을 숙지 및 현장 확인 후 견적 할 것)

나. 설계도서(도면과 도면, 도면과 시방서)간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, 반드시 서면질의응답을 통하여 우리 대학으로부터 명확한 공사 방법 및 한계를 제시받아 견적하여야 한다. 질의 회신 내용에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견적 시 상급사양(상위공법)으로 견적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시공 중에 설계도서의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상급사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한 추가비를 요청할 수 없다.

다.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교내외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 대자가 부담한다.

라. 일반사항

- ①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.
- ② 전시물은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·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.
- ③ 전시설비는 유물의 가치를 높이고 시각적 아름다움을 총족시킴으로써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.
- ④ 전시면은 그래픽패널 설치를 고려하여 면을 반듯하게 조정함으로써 이차 면고르기 작업이 필요 없게 한다.
- ⑤ 전시물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친환경 제품(친환경페인트, 합판E1, 석고보드 중성, 판넬F1)이어야 하며,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연재 및 방염 처리된 재료를 사용한다.
- ⑥ 설명패널과 그래픽 디자인은 시안을 검토한 뒤 규격, 부착 위치 등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.
- ⑦ 전시시설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제작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며, 상세 공정 및 상이한 부분은 발주부서 및 감리와 협의하여 제작한다.
- ⑧ 본 전시의 전시시설 설치공사는 그래픽·배너 제작, 설치 외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설부제정 관련 규정 및 표준 설명서에 따른다.
- ⑨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조정으로 변경사항이 발생 할 시 발주부서와 감리,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.
- ⑩ 배너·현수막 등은 설치 후 수시로 확인하고 부속품을 교체하여 전시폐막일까지 형태가 온전하게 한다.
- ⑪ 기타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부서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.

마. 세부 지침

① 전시설계

- 가. 제안요청서를 발주부서의 기획 의도에 따라 보완하여 설계 후 계약한다.
- 나. 전시장의 관람 동선은 원활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, 전시실 내부 관람객 휴게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.
- 다. 부문별 주제에 따른 관련 유물을 참고하여 계획한다.

② 전시공간

가. 공간구성

- 전시장의 관람 동선은 원활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, 전시실 입구와 출구, 전시 아이템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부문별 주제에 따른 관련 유물을 참고하여 계획한다.
- 전시실 정문 및 전시 파트별 입구를 전시 주제에 맞게 입체적으로 구성한다.
- 전시의 대표유물 및 주제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전시연출 기법을 제안한다.

나. 전시조명설비

- 전시설계 시, 전시물의 전체조명 및 집중 조명 등 전시연출에 적합한 조명배치와 조명기구 등 조명연출계획을 수립한다.
- 이미 설치되어 있는 조명기구 사용이 기본이며, 별도 필요시 조명기구·트랙·렌즈 등 부속품을 추가로 설치한다.
- 조명 설치 시 조명 설치 요원을 배치하고 조명연출계획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명을 설치한다.
- 신규조명 설치 시에는 유물의 종류와 전시기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을 선택하여야 하며,

연색성과 색온도 등을 계획 시 반영한다.

- 전기공사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시공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공사업체에 있다.
- 기존 각종 설비(전기·통신·방범·공조 등)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발주부서와 의논해 시공하며, 전시종료 시 원상 복구한다.

다. 색채구성

- 부분별 차별성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되,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대별 색채 사용의 제약을 고려하고 역사성에 맞는 색채를 선택한다.

③ 전시시설

가. 전시실의 천장, 벽, 바닥, 훌 등의 마감 재료는 주위 시설 및 조명과 조화를 이루고 전시물 보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계획한다.

나. 유물 보존 및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전시 자재는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.

다. 진열장

- 발주부서가 보유한 진열장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신규 진열장은 제작·설치한다.
- 신규 진열장 제작 시 전시효과와 전시물 보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진열장을 설계하되 시공성, 경제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진열장과 조화되도록 제작한다.

※ 기존 및 신규 진열장을 설계내용에서 구분 표시

- 진열장과 유물 형태에 맞는 유물 받침대를 제작·배치한다.
- 진열장의 조명은 퇴색 방지용 형광등과 광섬유 혹은 LED 조명으로 설치하되, 가급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- 유물과 함께 배치되는 조습제 및 온습도계 등이 전시 관람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진열장 내부를 설계한다.

라. 전시보조물(전시대·받침대·패널·설명 카드·배너 등) 설치

- 전시연출에 필요한 받침대, 전시대, 실사출력물, 기타 전시 사인물 등은 전시물의 특성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디자인 연출한다.
- 유물 받침대·패널·설명 카드·배너 등은 유물의 안정적이고 무해한 거치·보존 및 시각 효과와 유지관리의 용이성·내구성 등을 보장하도록 재질·형태·색채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.
- 전시 패널(사진 포함한 그래픽 패널)·배너·설명 카드는 교체용을 고려하여 적정량으로 제작한다.

마. 영상 설치연출

- 영상물은 최신기법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설비와 구성이 되도록 제안한다.
- 전시 분위기에 맞고 전시물의 이해를 도우며 관람객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영상물을 전시 시나리오에 따라 계획하여 제안한다.
- 영상물 설치는 영상 케이블·전기설비·거치대·영상 세팅 등 일체이며, 구매 또는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영상 연출에 필요한 빔프로젝터는 제작 영상에 최적화된 최신 기기를 사용하며, 사용 개수는 발주부서와 상의하여 정한다.

- 전시연출에 필요한 영상물의 제작 · 편집 및 외부기관 소장자료 저작권 구매 등 소요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.

바. 모형 설치연출

- 외부 소장 모형의 대여 시 모형의 운송 · 설치 · 보험 가입 등의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전시구성에 맞게 전시대와 보호시설을 제작한다.
- 전시 분위기에 맞고 전시물의 이해를 도우며 관람객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모형을 전시 시나리오에 따라 계획하여 제안한다.

④ 원고, 번역, 통역, 감수 등

- 가. 유물 목록 및 설명 원고는 발주부서가 제공한다.
- 나. 제작 중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전문가(감리) 자문을 충실히 이행한다.
- 다. 원고 작성 및 교정 · 감수자는 발주부서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선정한다.
- 라. 설명패널 제작을 위한 번역 · 교정 · 감수 등의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.
- 마. 전시연출을 위해 필요한 통역 및 번역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.
- 바. 영상 · 사진 · 그래픽 · 유물복제 등 전시물 제작과 관련한 외부기관 소장자료 사용 시 그에 따른 저작권 협의 및 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
⑤ 배너 · 현수막 제작

- 가. 디자인은 검토 결과에 따르며 원색분해 등은 최상으로 한다.
- 나. 규격은 설치 위치에 따라 5종 이내로 제작한다.

바. 착수 및 완료

- ① 전시물 제작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.
- ② 설계보완은 발주부서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발주부서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검토를 마친 뒤 제작·인쇄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.

4. 기타사항

- 가. 전시물 제작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한다.
- 나. 제작계획이나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제작 · 수행한다.
- 다. 전시물 제작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,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대상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라. 제작자는 전시물 제작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, 제작과 관련한 제반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.
- 마. 전시물 제작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.

- 바. 준공된 결과물에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.
- 사. 공사대금은 본교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된다.(용역 완수후 교내 행정절차에 따라 검수부서의 검수절차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, 세금계산서 발행은 발주처 요청시 진행)
- 아. 현장 안전관리 등 철저히 하고, 착수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착수서류를 제출한다. 준공시 발주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.

■ 특기사항

1. 기존 시설물의 파손에 유의하고, 자재 반입 및 작업시 유의한다. 기존 인프라에 대한 파손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교체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2. 도면 및 제공 자료에 대한 협의는 감리와 우선 협의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.
3. 기타
 - 가.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《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(법 제4조, 제9조)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나. 민원 발생시 작업 중단할 수 있으며,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.
- 다.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(안전관리비 증빙으로 활용 가능)
- 라. 모든 자재는 샘플북을 현장에 구비하고, 발주처 담당자 현장 협의후 승인을 득한 후에 자재 발주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.
- 마. 준공청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- 1) 공사완료 후 내·외부 공간에 대한 준공청소를 실시하고, 발주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.(바닥 청소작업 2회 이상 실시하여, 관련 사진대지 제출 필수) 준공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추가적인 청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일정을 수립하고 청소 실시한다.
 - 2)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당일 교외로 반출하고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다.

불임 1. 도면 1부

2. 사진 참고자료 1부. 끝.